

# 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<http://www.seo.incheon.kr/>

선	기관위원장
람	

제1547호 2020. 10. 12(월)

## 차 례

### 고 시

-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72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----- 1

### 공 고
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532호 차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- 5

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0-172호

##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

『도로명주소법』 제18조 및 『같은 법』 시행령 제23조,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·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. 10. 12.

### 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○ 부여·폐지 도로명주소 : 인천 서구 중봉대로 1534 외 60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부여(변경·폐지)사유	도 로 명 고 시 일	도 로 명 부 여 사유
		별도 열람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(☎560-4830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[www.juso.go.kr](http://www.juso.go.kr)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20.10.12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 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##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

고시일 : 2020-10-12

연번	지번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	비고
1	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350-12, 350-11	인천광역시 서구 중동대로 1534 (금곡동)	20090706	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으로 금산 싸움에서 7백 의병과 함께 전사한 조현신생의 호를 따서 제명	
2	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8-46	인천광역시 서구 청서로 39 (청라동)	20101111	청라대로 서쪽에 위치	
3	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0	인천광역시 서구 소담2로 51 (금곡동)	20191223	소담로에서 두 번째 분기되는 도로	식물단지 6지구 7획지
4	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372-3	인천광역시 서구 금산로 22 (경서동)	20200629	도로진행방향에 금산이 위치하고 있어 금산로라 명명함	
5	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962, 962-1, 962-	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608반안길 14 (당하동)	20081231	원당대로608반길의 안쪽으로 분기되어있는도로	
6	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732-4	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15번길 19-10 (오류동)	20090922	봉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7	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732-14	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15번길 19-12 (오류동)	20090922	봉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8	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732-15	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15번길 19-14 (오류동)	20090922	봉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9	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56-5	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161번길 9-9 (청라동)	20140804	청라국제도시 이미지 부각 및 청라한내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,61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10	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41-13	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173번길 4-10 (청라동)	20101111	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,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	



인천광역시 서구 제2020-1532호

##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

「자동차관리법」 제24조의2(자동차의 운행정지 등)제1항 위반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22조(운행정지명령대상 자동차의 확인)에 따른 운행정지명령대상 차량으로 확인되었기에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4조의2(자동차의 운행정지 등)제3항제4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.

2020. 10. 12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1. 공 고 기 간 : 2020. 10. 12. ~ 2020. 10. 26.(15일간)
2. 공 고 내 용

1. 행정처분 제목	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			
2. 대상 차량	등록번호	71모5995 외 4건(붙임 참조)		
	차명			
3. 운행정지사유	소유자의 요청 등			
4. 법적근거	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(자동차의 운행정지 등)			
5. 관할관청	기관명	인천광역시 서구청	담당부서	차량민원과
	주소	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(심곡동) (☎ 032-560-5747, FAX 032-560-2793)		

### 3. 유의사항

- 1)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.
- 2)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.

- 3)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이 가능하며 말소 등록된 자동차(무등록 자동차)를 운행 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
- 4) 그 밖에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서구청 차량민원과 차량관리팀(☎ 032-560-5747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# ■ [붙임] 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

연번	자동차등록번호	소유자명	운행정지명령 등록일	비고
1	71모5995	남*훈	2020.09.22	
2	19러3334	남*훈	2020.09.22	
3	12모2220	김*종	2020.09.29	
4	86라1818	황*일	2020.09.29	
5	15오2932	이*웅	2020.09.29	